

전라북도국세교류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센터의 경영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센터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1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일반사항

○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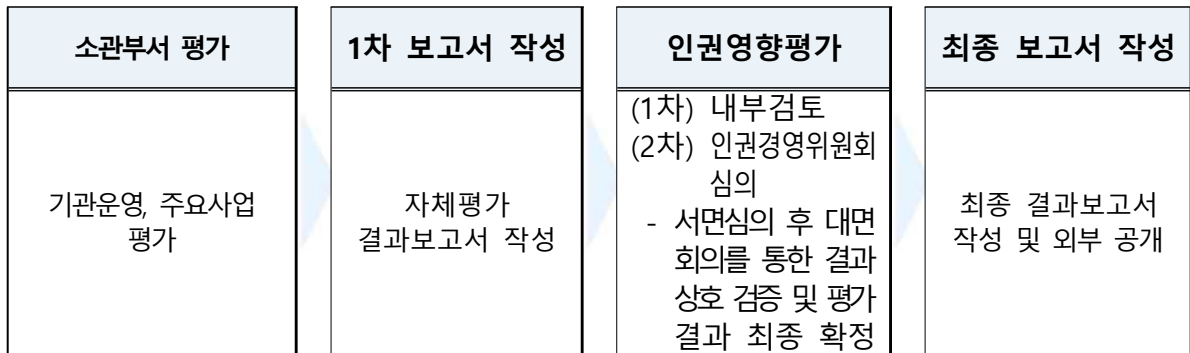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0개 분야, 27개 중분류, 118개 지표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개 사업, 4개 중분야, 20개 지표
 - 공정운영, 교류국 주민의 사회·문화적 권리 보장, 교류국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진, 사업 후속 조치

○ 평가방법

- (1차)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 소관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 (2차)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확정
 - 서면심의 후 대면 회의를 통한 최종 평가 확정

구 분	1차	2차
방 법	소관부서 평가	1차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주 체	체크리스트별 평가 주관부서	인권경영위원회
내 용	· 자체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자체 평가 결과 타당성 및 검토·수정 · 취약요인 및 개선·보완 사항 제언 등

○ 평가절차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인권영역별 등급 산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90점 ~80점	80점 ~70점	70점 ~60점	60점 ~50점	50점 ~40점	40점 ~30점	30점 ~20점	20점 ~0점

-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비고
증빙자료	- 지표 내용에 해당하는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가지 자료를 작성 - 부득이하게 두가지 중 하나의 자료만 있는 경우 하나의 내용만 작성	
예	- 현황 내용이 해당 지표 내용과 일치하며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 개가 모두 명확한 경우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 명시만으로 인정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공시 인정	
보완필요	- 현황 내용에 보완을 거치면 '예'로 답할 수 있는 경우 - 증빙자료가 있으나 근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아니요	증빙 내용이 해당 지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정보없음	미래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지표 내용을 증빙할 만한 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이 없으며 센터와 관련 없는 지표 (기관에서 향후 5년간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지표별 평가위원 구성 및 점수산출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98.7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평가위원	점수	지표담당부서
총점 평균			98.7	경영기획팀
1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위원회	97.7	
2	고용상의 비차별	인권경영위원회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인권경영위원회	98.6	
4	강제노동의 금지	인권경영위원회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인권경영위원회	100	
6	산업안전보장	인권경영위원회	95.8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경영위원회	100	
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인권경영위원회	100	
9	환경권 보장	인권경영위원회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인권경영위원회	10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100점**으로, 9등급 중 **1등급**으로 나타남

구분	평가지표	평가위원	점수	지표담당부서
총점 평균			100	국제진흥팀
1	공정운영	인권경영위원회	100	
2	교류국 주민의 사회·문화적 권리 보장	인권경영위원회	100	
3	교류국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진	인권경영위원회	100	
4	사업 후속조치	인권경영위원회	100	

□ 평가결과 활용

○ 환류 및 개선조치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분야는 개선과제별 업무분장 후 이행실적 관리

○ 인권경영 평가보고서 대외공개

-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체계, 부정적 인권영향 방지조치 수립 및 이행과제 추진 현황 등
- 투명한 인권경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2 인권영향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그래프	점수표																								
	<table> <tr> <th>평가지표</th><th>점수</th></tr> <tr> <td>총점 평균</td><td>98.7</td></tr> <tr> <td>1. 인권경영체계 구축</td><td>97.7</td></tr> <tr> <td>2. 고용상의 비차별</td><td>100</td></tr> <tr> <td>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td><td>98.6</td></tr> <tr> <td>4. 강제노동의 금지</td><td>100</td></tr> <tr> <td>5. 아동노동의 금지</td><td>100</td></tr> <tr> <td>6. 산업안전보장</td><td>95.8</td></tr> <tr> <td>7. 책임있는 공급망관리</td><td>100</td></tr> <tr> <td>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td><td>100</td></tr> <tr> <td>9. 환경권보장</td><td>100</td></tr> <tr> <td>10. 소비자 인권보호</td><td>100</td></tr> </table>	평가지표	점수	총점 평균	98.7	1. 인권경영체계 구축	97.7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98.6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보장	95.8	7.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1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9. 환경권보장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평가지표	점수																								
총점 평균	98.7																								
1. 인권경영체계 구축	97.7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98.6																								
4. 강제노동의 금지	100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6. 산업안전보장	95.8																								
7. 책임있는 공급망관리	100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9. 환경권보장	100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지표별 주요 의견】

1. 인권경영체계 구축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있고, 향후 협력고객, 도민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인권경영현장 등 기본방향성 개선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인권 구제절차의 경우, 인권침해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침 등 근거가 있으며, 구제 매뉴얼 제작 등 선제적 추가 조치 필요
- 인권침해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 마련 필요

2. 산업안전 보장

- 안전관리 및 위생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요소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필요
- 산업안전 부분인 시설점검, 교육 등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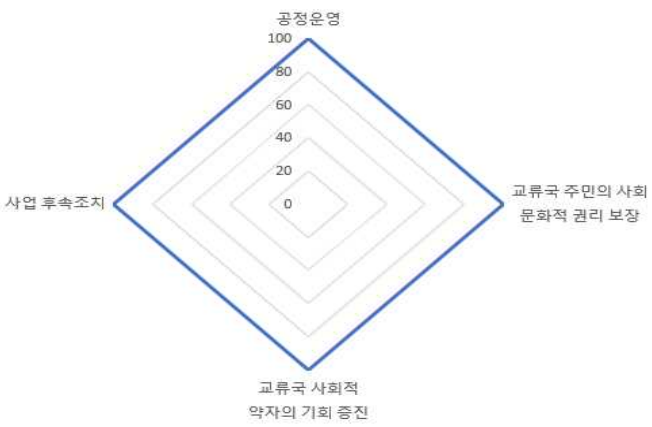
3.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계약상대방에 대한 인권보호, 인권침해 등 발생시 필요한 조치 사항 등 안내 과정 추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4. 환경권 보장

-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매뉴얼 등을 별도 마련 필요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그래프	점수표	
	평가지표	점수
	총점 평균	100
	공정운영	100
	교류국 주민의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	100
	교류국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진	100
	사업 후속조치	100

3 결과 분석

□ 강 점

○ 노동 기본인권

- 세계인권선언, UN 글로벌 컴팩트, 근로기준법, 국가인권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여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복지제도 등을 개선·확대하고 있음

○ 강제노동 금지

-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자들의 필기·면접 시험 결과 이해를 위하여 개인 요청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행정안전부 인사조직지침 등을 준수하여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외교류사업

- 주요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류국 지역민의 지속 가능한 인권보장을 위해 소통채널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후속 사업을 위한 교류국 협력기관과 기획운영하고 있음

□ 약 점

○ 인권경영체제 구축의 경우,

- 외형적 틀은 갖추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어 향후 평가 후 내용 공유 및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직원 등에 공람 필요

□ 중점 보완사항

- 인권영향평가 주요 분야별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 매뉴얼 등 보완
- 인권영향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과 외부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채널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내외부 고객, 계약상대자와의 협력사업 추진시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징구

4

개선과제 및 환류체계

○ (개선과제) 중점 보완사항 이행

평가지표		담당부서
① 인권경영체계 구축	이행과제	
- 인권경영현장 정기적 검토	-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한 인권경영현장 개선	경영기획팀
- 인권경영 공유 및 개선평가체계 구축	- 인권경영 개선활동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및 개선활동 평가체계 구축	경영기획팀
- 구제절차 매뉴얼 수립	-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 매뉴얼 수립	경영기획팀
② 산업안전 보장	이행과제	담당부서
- 산업안전 관리 매뉴얼 수립	- 산업안전, 위생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수립	경영기획팀

○ (환류체계) 중점 보완사항 담당부서별 업무분장 부여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인권경영체계 구축 노력
- 차년도 개선실적에 반영하여 인권경영 개선도 향상 제고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1.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1		인권경영헌장 선포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0)							
1	센터는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5					
2	인권경영헌장은 센터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5					
3	센터의 인권경영헌장은 센터내부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5					
4	센터의 인권경영헌장은 해당 센터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5					
5	인권경영헌장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5					
6	인권경영헌장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5					
소 계							

1.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45)							
1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5					
2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센터 내·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5					
3	센터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5				
4	자회사나 협력기관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5					
5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소 계							

1.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50)							
1	센터는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5					
2	센터는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5					
3	센터는 인권준수를 위한 감시기구 및 제도를 운영중이다.	5					
4	센터는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5	자회사나 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센터 차원에서 대응한다.	5					
소 계							

1.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4		인권경영 성과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0)							
1	센터는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5					
2	센터는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5					
3	센터는 인권경영 개선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아 그 성과를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5					
4	센터의 인권경영 영향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5					
5	센터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객관적이고 적정하다	5					
6	센터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권경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	5					
소 계							

1. 인권경영체제 구축							
분야 5		구제절차 마련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9)							
1	센터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5					
2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 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5					
3	구제 접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	4	1				
4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5					
5	피해자가 센터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5		
6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5		
소 계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1		고용상 비차별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0)							
1	센터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5					
2	센터는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5					
3	센터는 임금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4	센터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5					
5	센터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6	센터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소 계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2		고용상 남녀비차별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70)							
1	센터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5					
2	센터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5					
3	센터는 임금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4	센터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5					
5	센터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5					
6	센터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5					
7	센터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5					
소 계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0)							
1	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2	센터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센터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5					
3	센터는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한 보수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					
소 계							

2.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0)							
1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5					
2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3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현지 임직원의 인권과 관련된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5	
소 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1		결사·단체교섭 자유 보장 일반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0)						
1	센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5				
2	센터는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3	센터는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5
4	센터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소 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금지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0)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5				
3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5				
4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5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 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소 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							
1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5	
2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3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5	
4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5	
5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5	
소 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분야 4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9)							
1	센터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센터는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4		1			
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5					
소 계							

4.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 1		강제노동 금지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50)						
1	센터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5				
2	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5				
3	센터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5				
4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5				
5	근로자는 퇴사 시 사전통지 또는 의향 표시를 1개월 이전에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	5				
소 계						

4. 강제 노동의 금지						
분야 2		자회사, 협력회사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						
1	센터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5
2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5
3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5	
소 계						

5. 아동노동의 금지						
분야 1		연소자 고용 금지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40)						
1	센터는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5				
2	센터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5				
3	센터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5				
4	센터는 교육프로그램을 병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5
5	센터는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5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5
7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5
소 계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1		작업장 안전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8)							
1	센터는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하도록 유지한다.	4	1				
2	센터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5					
3	사무실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정수기, 세면대, 의자,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4	1				
소 계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2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0)							
1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 되고 있다.	5					
2	센터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5					
3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4	장애인들이 센터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5		
소 계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7)							
1	센터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1				
2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 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5					
3	사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		1			
4	센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5					
소 계							

6. 산업안전 보장							
분야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20)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5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5					
소 계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1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센터는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5				
2	센터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5
소 계						

7.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분야 2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센터는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5	
2	센터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5				
3	센터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5
4	센터가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5
소 계						

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분야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10)							
1	관련 법령에서 센터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5					
2	센터는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5	
3	센터는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					5	
소 계							

8.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분야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0)							
1	센터는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5					
2	센터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5					
3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5					
소 계							

9. 환경권 보장							
분야 1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30)							
1	센터는 국내·외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5					
2	센터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5					
3	센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소 계							

10.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50)							
1	센터는 용역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의 재산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5					
2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서비스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5					
3	센터의 사업 및 서비스 홍보 시 허위나 과장,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	5					
4	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사업내용, 서비스 등에 대해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5	사업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5					
소 계							

10. 소비자 인권 보호						
분야 2	소비자 사생활 보호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60)						
1	센터는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센터가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5				
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5				
4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5				
5	고객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5				
소 계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

1. 해외 교류사업						
분야 1	공정운영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80)						
1	사업 수행자 선정 공고 시 선정방법 및 진행절차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5				
2	차별적 요소 없는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해 적법절차를 관계 부서에 의뢰하였다.	5				
3	사업 수행자 선정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시행되고 있다.	5				
4	센터는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5				
5	센터는 사업 수행자의 과업 이행 시 전라북도국제교류 센터의 인권경영을 존중하고, 인권존중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 하였다.	5				
6	센터는 사업 수행자의 과업 수행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안내 하였다.	5				
7	센터는 사업수행자에 대한 계약금을 특별한 지급 불가 사유가 없는 한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였다.	5				
8	센터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 수행자의 피해를 방지하였다.	5				
소 계						

2. 해외 교류사업						
분야 2		교류국 주민의 사회·문화적 권리 보장				
지 표 명		답변결과				비고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점수 (60)						
1	센터는 매체를 통해 교류국 주민에게 아동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2	센터는 아동 발달장애에 대한 교류국 주민의 인지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3	센터는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인지제고를 위해 교류국의 기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5				
4	센터는 교류국 주민의 취업기회 보장 및 자아 실현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5				
5	센터는 교류국 주민, 해외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6	센터는 사업대상 교류국 주민 및 사업 관계자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5				
소 계						

3. 해외 교류사업						
분야 3		교류국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진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40)						
1	센터는 아동 발달장애 증상 진단 서비스를 받지 못한 교류국 아동에게 무료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2	센터는 교류국 장애아동을 다루는 특수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3	센터는 놀이치료실 조성, 치료기구 지원 등을 통해 교류국 장애아동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4	센터는 교류국 장애아동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5				
소 계						

4. 해외 교류사업						
분야 4		사업 후속조치				
지 표 명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점수 (4)						
1	센터는 교류국 지역민의 지속 가능한 인권 보장을 위한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5				
2	센터는 교류국 지역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기관과 사업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소 계						